

보도 일시	2022. 2. 16.(수) 12:00 2022. 2. 17.(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2. 16.(수) 12:00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윤정화 (044-202-7720)
		담당자	사무관 장순남 (044-202-7721)

마음에 마음을 더하면 커지는 힘, 고용평등상담실이 함께 합니다

- ◇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상담사례를 담은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발간**
- 상담사가 전하는 초기대응 및 2차 피해 대응 요령, 피해자 마음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사례 등 수록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해('21년)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원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상담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담은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 고용평등상담실(전국 21개소)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 안내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으며,
 -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 '21년에는 총 11,892건의 상담 지원으로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과 함께, 사업장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체계적인 안내·지원으로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통한 분쟁 사전 예방의 역할을 수행했다.
- 사례집에는 ▲직장 내 성희롱 초기대응 우수사례 ▲미온적인 사내 징계와 2차 피해에 대응한 사례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활동·대응한 사례 ▲임산·출산 후 겪은 불이익에 맞선 사례 등 총 12편을 수록했다.

(사례①) 입사 후 시작된 성희롱, 1년간의 기록이 증거

신입사원 회식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상사의 성희롱은 무려 1년간 지속됨. 허벅지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신체접촉부터 '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 '꿈에서 나한테 안겼다'는 언행까지 일삼는 상사에게 불쾌감과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혼자는 내담자의 집까지 찾아오는 등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름

☞ 미온적인 사내 징계와 2차 피해... 가해자 유죄판결로 2년 만에 일상 되찾아

1년간의 기록을 증거로 상담실 안내에 따라 사내 고충을 신청하여 가해자는 공개 사과문 게시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능커녕 직속상관으로 마주쳐야 했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2차 피해를 겪음. 내담자는 상담실 도움으로 6가지 성추행 사건들을 추려 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냄

(사례②) 임신으로 업무 재배치 요구했더니... “너만 생각하냐?”

내담자는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격무에 시달리던 중 임신으로 입덧이 심해져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배려능커녕 부서 막내라는 이유로 대형화분을 옮기거나 동료들의 점심 도시락을 포장해 오는 일까지 떠맡음. 급기야 하혈로 유산방지제 처방을 받게 되면서 회사에 6개월까지 만이라도 집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너만 생각하냐?”,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 당당한 용기로 되찾은 임신 근로자의 권리 ‘사내 최초’라는 선례 남겨

내담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의무가 있다’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사측에 업무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권리주장을 이기주의로 둔갑시켜 질타하는 회사의 태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상담실의 지원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인병휴가와 타 부서로의 업무 전환 배치를 받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회사를 움직여 최초의 선례를 만들어냄

-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초기대응 등 대처 방법에 대한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의 현장 인터뷰와 함께,
 - 심리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문제, 심리치유의 중요성 등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연계·지원하는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내용도 담았다.

(초기대응)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할 때는 객관화해서 단호하게 말하기!

- 문제 제기는 불편함을 느끼는 즉시 하는 것이 좋고,
자신의 불쾌한 감정만 명확히, 담담한 톤으로 전하는 것이 효과적임
- 대답하기 곤란할 땐 고용평등상담실에 문의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자책감’, ‘자기 혐오감’을 끊어내도록 돕습니다.

- 프로그램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힘들어하거나, 분노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도록 ‘자책감’이나 ‘자기 혐오감’과 같은 감정들을 끊어내도록 도움
- 또한, ‘당신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까지 몇 번이고 알려주고, 이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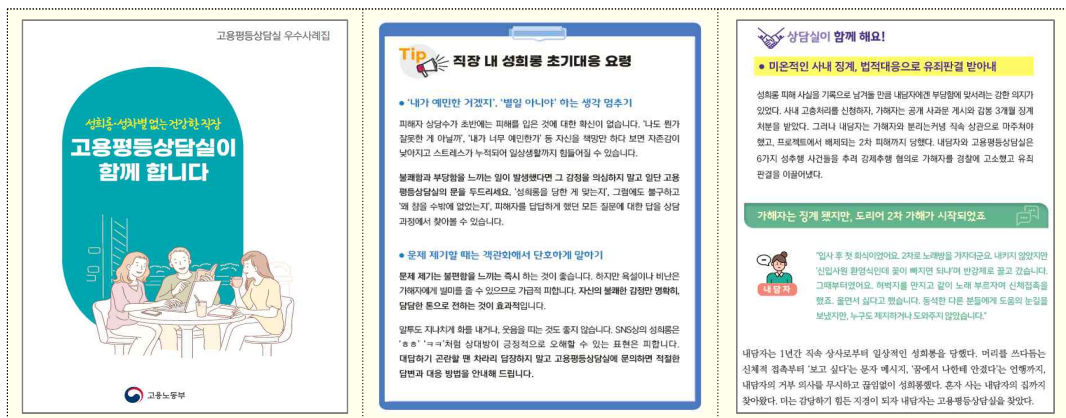
- 한편, 고용평등상담실의 도움으로 성희롱 피해를 이겨낸 후 성폭력 전문 상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자(“피해자 아픔 공감하는 조력자 될래요”)의 이야기도 수록됐다.

□ 박성희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통한 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함께, 현장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라며,

- “앞으로도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 고충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고용평등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를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은 전국 고용평등상담실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되었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책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표지 및 내용 >



<붙임1> '21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 1부.

<붙임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개요 1부.

<붙임3> '22년도 고용평등상담실 현황 1부.

(사례③) '딸 같아서 만졌다?' 70대 상급자의 교묘한 성희롱

상급자의 신체접촉, 음담패설 등 입사 초기부터 성희롱을 당한 내담자는 연로한 상급자의 친근감 표시로 여겨 참았지만, 회식 자리에서의 음란한 대화 유도, 불쾌한 신체접촉이 '노래방에 가면 돈을 주겠다',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라' 등의 모욕적인 언사로까지 이어져 가해자에게 불편함을 표현하자, '장난이다', '딸 같아서 그런 건데 예민하다'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충격을 받고 대응에 나섬

☞ 상담실 초기대응 전략에 따라 증거자료 모아 형사고소

심한 성희롱 충격에도 내담자는 피해 사실 입증에 위한 상담실의 초기대응 전략에 따라 사건 당시의 정황,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한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측에 가해자 분리 조치와 징계를 요구함. 사건을 인지한 사측은 가해자를 타 부서로 배치하였으나, 가해자는 징계 불복으로 무단결근을 거듭하다 해고되었고, 내담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함

(사례④) 정규직 전환 앞두고 일어난 위계 성폭력

정규직 전환을 앞둔 내담자는 중간관리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함.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대처하지 못하는 동안 2차 피해와 함께 가해자가 있는 부서로 배치되었고, 가해자는 자신의 인사권을 강조하며 내담자를 회유·협박함. 내담자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언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상담실의 법률 자문과 경찰 조사 시 동행 지원 등을 받으며 대응에 나섬

☞ 여성·시민단체와 연대한 공식 대응으로 가해자 징역 2년 실형 받아내

해고된 가해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형사재판 1심에서는 피해 사실을 즉각 신고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가해자 진술에 따라 무죄 판결함. 상담실은 여성·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등 연대활동을 전개, 마침내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선고를 끌어냄. 내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근무 중으로 2차 피해와 힘든 재판과정에서도 노동권을 지켜냈고,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권리보호에 힘을 더함

□ 사업 목적

-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와 분쟁 사전 예방

□ 근거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규칙 제3조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고용부고시 제2021-8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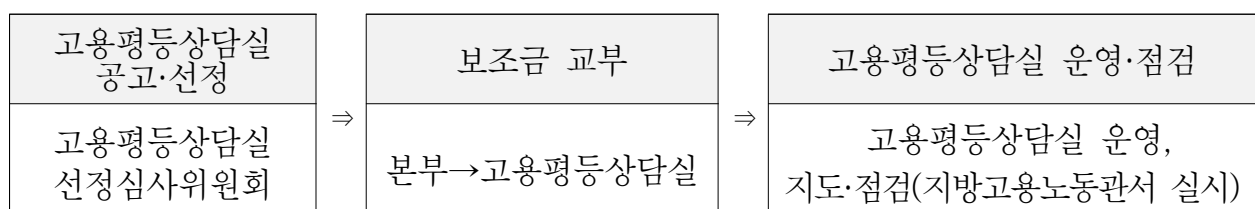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하여 피해 노동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에 비용 일부를 지원
- 2000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22년 2월 현재 전국 21개소 설치·운영
* 운영기관 수(개소): ('00) 10 → ('01) 14 → ('10) 15 → ('18) 21

□ 기능 및 역할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 노동자의 대처방안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분쟁 사전 예방
 - 상담 과정을 통해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은 행정기관(지방관서, 노동위, 국가인권위 등) 활용 안내 등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 성희롱·성차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의 심리불안 등 치유를 위해 전문심리상담사를 활용한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 제공

□ 추진 절차



붙임 3
'22년도 고용평등상담실 현황

청 별	단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상담전화)
서울 청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5층	02-3141-9090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벽산디지털밸리 1303	02-822-5054 0505-515-5050
	(사)노동희망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77 201호	02-302-0801
	한국여성민우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무 3층(성산중)	02-706-5050
중부 청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 부평구 마장로 39-4 3층	032-524-8831
	(사)부천여성노동자회	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 프라자 704호	032-324-5815
	(사)수원여성노동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3 두리빌딩 3층	031-246-2080
	(사)안산여성노동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1길 21, 4동 104호	031-495-6846
	한국노총 춘천영서지역지부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9	033-243-7576
부산 청	(사)부산여성회	부산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 한국빌딩 3층	051-506-2590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상가 5층	055-264-5049
대구 청	(사)대구여성회	대구 중구 동덕로 54 태암빌딩 4층	053-427-4595
	(사)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35 2층	053-566-6340
	(사)경주여성노동자회	경북 경주시 황성로 64번길 26 1층	054-744-9071
광주 청	(사)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 서구 경열로 69-1, 5층	062-361-3029
	(사)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일암빌딩 3층	063-286-1633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전남 광양시 불로로 123 근로자 종합복지관	061-792-0360
	(사)제주여민회	제주시 용담로 134 3층	064-756-7262
대전 청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65-15	043-273-7801
	(사)대전여민회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32번길 9-3	042-257-3534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충남노동자복지회관 2층	041-551-9119